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74
----------	-----

2017. 9. 11.(월)  
건설소방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장선배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 2017년 8월 21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8월 22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8월 30일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장선배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 의미가 다른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도내 기업의 녹색 제품 인증과 인증 유지에 따른 경비 지원 및 충청북도 녹색제품구매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띄어쓰기 변경
- 타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일부개정(안 제7조)
- 상위 법령의 의미가 축소 또는 확대, 위배되는 조항 삭제  
(안 제9조, 제10조)
- 도내 기업의 녹색제품 인증과 인증 유지에 따른 경비지원(안 제12조)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2)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정일하)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상위법과 맞지 않는 사항을 삭제하고, 충청북도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만을 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9조와 같이 의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규정하였으며,
- 같은 법 제6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도 조례로 일괄적으로 규율할 것

이 아니라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같은 법 제17조의3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의 종류와 지원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17. 8. 14.~'17. 8. 20.)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

####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과 맞지 않는 사항을 삭제하고, 충청북도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를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법 제11조제1항제2호”로, “설정 및 변경·폐지”를 “설정·운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매 촉진시책”을 “구매촉진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매촉진”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정하였을”을 “선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을 “판단기준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되, 판단기준 평가단”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관내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 인증 및 인증 유지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56조의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제56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u>」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p> <p>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녹색제품구매 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p> <p>1. ~ 3. (생략)</p> <p>4. <u>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u></p> <p>5. ~ 7. (생략)</p> <p>② (생략)</p> <p>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1</p>	<p><u>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u></p> <p>제1조(목적) ----- 「<u>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u>」 제11조----- ----- ----- ----- -----.</p> <p>제4조(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p> <p>①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법 제11조제1항제2호</u>----- ----- ----- <u>설정·운영</u>-----</p> <p>5. ~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p>

항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의 설정은 협의회에서 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2. (생략)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5. (생략)

②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  
-----  
----- 구매촉진 시책 -----  
-----.

② 녹색제품 구매촉진 -----  
-----.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  
-----  
-----  
-----  
-----.

1.·2. (현행과 같음)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  
-----

4.·5. (현행과 같음)

② -----  
----- 선정한 -----  
-----.

③ -----  
-----  
----- 판단기준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되, 판단기준 평가단-----  
-----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생략)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 구매 의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0조(녹색제품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예외로 한다.

1.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4.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  
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녹  
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용자 및 판매 지원) ① ·

② (생략)

<신설>

<신설>

제12조(용자 및 판매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관내기업이 생산하  
는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 인  
증 및 인증유지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  
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  
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  
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5조(기관 평가) ① (생략)

②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시장·군수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 「하수도법」 제63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기관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폐기물관리법」 제56조-----  
-----  
-----  
-----.

## 관계 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2.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3.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4.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녹색제품 정보제공, 지역 녹색제품 생산 사업자 협력 등을 통한 녹색 소비 문화 확산 및 증진을 위해 환경표지 인증 수수료 재정 지원 및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안 제11조제3항 녹색제품 인증수수료 지원 비용(인증 수수료)
-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안 제14조의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인건비, 사업비)

###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1조제3항(용자 및 판매지원)
-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4조의1(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녹색제품 인증 수수료 지원 : 도내 50개 사업장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1개소

#### 나. 추계 결과

- 녹색제품 인증 수수료 지원 : 15,000천원/년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200,000천원/년

#### 다. 재원조달방안

- 녹색제품 인증 수수료 지원 : 도비 100%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국비 50%, 도비 5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6. 작성자 : 바이오환경국 환경정책과장 정홍진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세 입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세 출	1,075,000	215,000	215,000	215,000	215,000	215,000
녹색제품 인증수수료 지원	7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재원 조달	1,075,000	215,000	215,000	215,000	215,000	215,000
의존 재원	소 계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국 비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자체 수입	소 계	575,0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지방세	575,00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민간 자부담)						